



문서 유형:	RA 표준(standard)
적용 범위:	대한민국
문서의 상태:	승인 완료
버전(version)의 날짜:	2014년 12월
버전(version) 번호:	12-14
의견수렴 기간:	종료
승인 기관:	RA QA
담당자 성명:	Indu Bikal Sapkota
담당자 이메일:	isapkota@ra.org

제목:	대한민국의 산림경영인증 심사를 위한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잠정 표준
RA 문서 코드:	FM-32-대한민국(FM-32 – South Korea)

© 2007 레인포레스트 연맹(Rainforest Alliance, RA)이 저작권자임. 저작권자의 서면 승인 없이는 본 문서의 모든 내용은 그 어떤 형태로도 복제 또는 가공될 수 없음.

## 목 차

도입 .....	3
배경 .....	3
지역표준개발 .....	4
레인포레스트 연맹 표준 구조.....	6
소규모/대규모 산림경영체를 위한 지표 .....	7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표준 및 인증 과정에 대한 일반인 의견 수렴 .....	7
<b>대한민국의 산림경영 심사를 위한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잠정 표준 .....</b>	<b>9</b>
<i>부록 1: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산림법 및 행정적 요구사항 목록.....</i>	<i>35</i>

부록 2: 대한민국이 비준한 다국간 환경협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 (ILO).....40

부록 3: 대한민국에서의 멸종 위기종.....42

부록 4: 용어 해설 .....40

부록 5: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인증 평가 절차 요약.....48

## 도입

레인포레스트 연맹(Rainforest Alliance)의 핵심적인 활동 목적은 산림사업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 인증절차를 통해 우수 산림경영자를 인정하는 것이다. 레인포레스트 연맹은 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가 인정한 인증기관이다. 이 표준의 목적은 레인포레스트 연맹이 FSC 산림인증 시스템을 이용해 인증 결정을 위해 평가하는 산림경영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산림경영자, 토지소유자, 임산업체, 과학자, 환경보호론자 및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국제적인 인증 서비스를 통하여) FSC 에 의해 승인된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일반 지침을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을 위한 표준들이 개발되어 왔다. 현재 표준의 범위는 **대한민국**의 모든 산림 유형과 지리적 지역에 적용된다. 현재 잠정 표준은 특별히 레인포레스트 연맹으로부터 채택되어 **대한민국**에 적용되어 왔고, 이 버전에 덧붙여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해당사자의 투입과 현장 시험을 기초로 하여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할 것이다.

## 배경

산림은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경영될 수 있다. 경영의 대상은 목재 또는 목재이외의 임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천연림이나 인공림일 수 있고, 경영방식은 기계화 작업이나 인력에 의한 작업일 수 있으며, 경영주체는 대규모 임산업체 또는 지역사회 또는 협업체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조합의 경영이 가능하다. 중요한 과제는 산림경영 활동이 생태학적, 사회경제적, 조림적으로 광범위하게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 연구와 실질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얼마나 명확하고 일관되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다.

1991 년,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스마트우드(SmartWood) 프로그램은 산림 또는 작업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천연림 경영 심사 일반지침"인 최초의 산림경영인증 국제표준을 개발하였다. 또한, 스마트우드는 인도네시아의 천연림 경영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최초의 지역지침을 개발하였다. 1993 년, 스마트우드는 "인공림 심사를 위한 일반지침"을 공표하고 천연림 경영 심사 지침을 개정하였다. 1991 부터 1993 년까지 최초의 FSC 원칙과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초기 실무팀에서 스마트우드 사무국장이 공동의장을 맡았다. 1998 년, 7 년에 걸친 산림인증

심사 및 감사를 통하여 지침을 적용하고 경험으로 습득한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우드는 천연림과 인공림의 산림경영을 심사하기 위한 표준을 전면 개정하였다. 그 이후 2000 년과 2004 년에도 개정이 이뤄졌다. 1993 년 이후 각 표준이 레인포레스트 연맹을 산림경영 및 관리의 연속성(CoC) 인증기관으로 인정한 국제단체인 FSC 에 의해 검토되었다.

이러한 표준들은 전세계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직원 및 대표자들은 물론 임업전문가, 생태학자, 사회과학자 및 산림 현장실무자들의 자문을 받아 개발되었다.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대표자들은 1989 년부터 인도네시아와 캘리포니아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인증 지역표준을 개발하면서 터득한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다. 레인포레스트 연맹은 국제자연보호연맹(IUCN)과 국제열대목재기구(ITTO)가 발행한 산림경영 및 생물보전 뿐만 아니라 지침은 FSC 요건에 합치되도록 이러한 표준을 개발했다. 또한, 레인포레스트 연맹은 브라질 Imaflo라 와 덴마크 및 동유럽의 NEFCon 을 비롯한 레인포레스트 네트워크 파트너들, 국제산림연구센터(CIFOR), 국제노동기구, 과학자들, 임산업체, NGO, FSC 지역표준 실무팀의 작업 결과를 반영하였다. 이들을 포함한 국제적, 국가적, 지방조직 및 임업경영체, 임업인, 별채업자, 지역 이해당사자 등 과거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표준에 대해 비평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여 표준 개발에 지대하게 기여한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지역표준개발**

전세계의 FSC 실무팀은 국가 또는 지역 산림인증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레인포레스트 연맹은 표준개발을 하는데 있어 가능한 곳은 어디에서든지 전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하며 참여하고 있다. 경험으로 볼 때 지역표준 개발과정이 중요하다. 지역표준 개발은 미래의 산림과 인류공동체에 대한 중요하고 폭넓은 토론에 대중을 참여시키는 우수한 방법이다. 달리 말하면, 지역표준 개발은 단지 기술적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되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주제에 대한 폭넓은 논의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FSC 과정의 일부로써, 지역표준은 지역 실무팀이 개발해서 현장 적용을 거쳐 수정하고 용인한 후 FSC 본부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게 된다. 승인이 되면, 최종 산물은 "FSC 인정 표준"이 되는 것이다. 일단 인정되면,

레인포레스트 연맹과 같은 FSC 가 인정한 인증기관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서 FSC 인증을 추진할 때 기초적인 시작점으로 반드시 승인된 지역표준을 이용해야만 한다. 인증기관은 지역표준보다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수는 있어도 약화시켜 적용해서는 안 된다.

FSC 인정 산림관리표준에 적용되지 않는 모든 나라와 지역에서, 레인포레스트 연맹은 지역에 맞게 개조되거나 잠정적인 표준들을 지정된 지리학적 지역에서 산림경영체를 평가하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시켜 나갈 것이다. 이 개조된 표준들은 국가적 배경 (예를 들어, 법적 필수조건이나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전망)을 고려한 인증지표를 수정한 것과 더불어 스마트우드의 잠정 표준으로부터 개발될 것이다. 이 초안은 평가될 산림경영사업체가 위치해 있는 나라의 공식 언어로 번역될 것이며, 전체 심사를 위한 현장업무가 시작되기 적어도 30 일 이전에 제출될 것이다. 핵심 이해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인터넷 (이메일과 스마트우드 웹사이트의 포스트), 우편과 면담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전의 FSC 혹은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잠정 표준 하에서 인증된 경영체는 최소 1 년 이상의 기간을 갖고 새로이 인증된 FSC 지역 표준을 충족시킬 것이다.

또한 레인포레스트 연맹은 지표개발을 격려할 기반이자 잠정 표준의 검정체로 다른 자원들을 이용해 왔다. 이 잠정 표준들을 개발하는데 고려되고 검토된 문서들은 다음과 같다.

FSC-STD-01-001 (4-0 버전) 산림관리를 위한 FSC 원칙과 기준

FSC-STD-20-003 (2-1 버전) 일반산림관리 표준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역적 적용

FSC-STD-20-002 (2-1 버전) 산림관리표준의 구조와 내용

FSC-POL-30-401 FSC 인증과 ILO 협약

FSC-STD-01-003 소규모 저강도로 경영된 산림의(SLIMF) 적격 기준

산림경영 심사를 위한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잠정 표준, 레인포레스트 연맹, 2012년 3월

국제 비목재 임산물 인증을 위한 레인포레스트 연맹 규정, 레인포레스트 연맹, 2012년

## 레인포레스트 연맹 표준 구조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일반 표준들은 산림관리를 위한 FSC 원칙과 기준(FSC-STD-01-001)에 직접적으로 근거하고 있고, 글로벌 레인포레스트 연맹 표준을 개발하기 위해 각 기준은 구체적인 잠정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들 지표들은 감사관들(auditors)에 의해 산림경영사업체 후보의 영향과 산림경영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데에 산림에서 쓰일 목적으로 개발된 구체적인 지역 "레인포레스트 연맹 잠정 표준"로부터 시작된다.

표준은 다음 10 가지 원칙으로 구분된다:

- 1.0 법률과 FSC 원칙의 준수
- 2.0 소유권, 사용권 및 책임
- 3.0 원주민의 권리
- 4.0 지역사회 관계 및 노동자의 권리
- 5.0 산림이 제공하는 편익
- 6.0 환경에 미치는 영향
- 7.0 경영계획
- 8.0 모니터링 및 평가
- 9.0 보존가치 높은 산림의 유지
- 10.0 인공림

표준에는 FSC 각 원칙과 관련 기준이 레인포레스트 연맹 지표와 함께 기술되어 있다. 모든 원칙과 기준은 반드시 모든 심사 시 평가에 활용되어야 한다.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감사관이 특정원칙에 대해 적용 불가능 판정을 내릴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원칙 10 은 인공림이 없는 경우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 소규모/대규모 산림경영체를 위한 지표

FSC 정책에서 요구되는 것처럼 레인포레스트 연맹은 일정 규모의 경영체에 적합한 특정 기준(기준 6.1, 6.2, 6.4, 7.1, 7.2, 7.3, 7.4, 8.1, 8.2, 8.3, 8.4, 8.5, 9.1, 10.5, 10.8)에 맞는 지표를 개발해 왔다. 소규모 대 대규모 산림경영사업체의 정량적 정의는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지역 잠정 표준에 기술되어 있다.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지역적 시발점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대규모 산림경영사업체는 50,000ha 이상인 경우로 간주된다. 소규모 산림경영사업체의 정의는 소규모 저강도로 경영된 산림을 결정한 FSC 지역적 시발점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FSC 국가사무소나 FSC 본부(100ha 이하)에 의해 결정된다.

##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표준 및 인증 과정에 대한 일반인 의견 수렴

인증과정은 공적 및 사적인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거나(예를 들면 국유림의 경우) 인증 경영체에 의해 일반 배포가 승인되지 않는다면 인증 심사자료는 공개 문건이 아니다. 하지만, 각각의 인증 산림경영사업체에게 아래의 세 가지 문건은 공개된다.

- 현장실사 30 일 전에 인증심사를 일반 이해당사자에게 공지하는 문건
- 심사에 이용되는 인증 표준
- 각각의 산림인증 결과를 담은 일반 인증 요약서.

일반 이해당사자에게 공지하는 문건은 인증심사 개시 최소 45 일 이전에 일반에게 심사를 공지하는 것이다. 이 문건은 심사 이전 또는 심사 중에 공개적으로 배포된다. 이 문건은 일반적으로 인편, 팩스, 우편, 이메일을 통해 배포되며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웹 사이트([www.rainforest-alliance.org](http://www.rainforest-alliance.org))에 게재된다. 심사에 이용되는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표준은 심사 이전 또는 중간에 공개가 가능하며, 산림인증의 공개 기록 중 하나이다. 일반 인증 요약서는 인증과정의 최종 단계에서 작성되며 인증신청 경영체의 인증이 승인된 이후에만 공개가 가능하다. 공개인증요약서를 입수하고자 할 때에는 <http://info.fsc.org/>를 통해 FSC 인증기관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레인포레스트 연맹(레인포레스트 연맹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Jl. Kaptan Cok Agung Tresna, Griya Alamanda

Blok No. 17, Lingkungan Jayagiri, Denpasar Timur, Denpasar, Bali, 80234 Indonesia. Tel: +62-361 256 689; Fax: +62 361 256 634; Email: [asia\\_pacific@ra.org](mailto:asia_pacific@ra.org))에 연락하면 된다.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어떤 의견도 좋으니, 인증을 신청할 경영체나 또는 인증 받은 경영체, 인증 표준 또는 인증 절차에 관한 의견을 적극 보내주기를 권장합니다.

## 내용

### A 범위

이 표준은 대한민국의 산림경영사업체의 FSC 산림경영인증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어야 한다.

### B 표준유효일

이 표준은 2008년 5월 1일부터 유효하다.

### C 참고문헌

FSC-STD-01-001 (4-0 버전) 산림관리를 위한 FSC 원칙과 기준

FSC-STD-01-002 (1-0 초안) FSC 용어해설집

### D 용어와 정의

용어해설을 위한 부록 4를 보시오.

두문자어:

**FME:** 산림경영사업체 (Forest management enterprise)

**FSC:** 산림관리협의회 (Forest Stewardship Council)

**HCVF:** 고보존가치산림 (High conservation value forests)

**RA:** 레인포레스트 연맹 (Rainforest Alliance)

**SLIMF:** 소규모 저강도로 경영된 산림



## **대한민국의 산림경영 심사를 위한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잠정 표준**

### **기준 1. 법률과 FSC 원칙의 준수**

국내의 모든 산림관련 법률 및 국제 조약과 협정을 존중하고, 모든 FSC 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여 산림을 경영해야 한다.

#### **1.1 모든 국내법규와 자치단체의 조례 및 행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산림을 경영해야 한다.**

1.1.1 산림경영사업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법규와 조례를 준수하고 있음을 기록으로 입증해야 한다. 관련 법규는 부록 1 에 명시되어 있다. 단, 부록 1 의 구체적인 국가와 자치단체의 법규 목록은 포괄적이지 않다. 이 목록은 단지 관련 전 지역 혹은 각 다른 지역에 걸쳐 산림경영에 적용되는 법규와 규정을 위한 안내자료로 제시되었다.

#### **1.2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모든 요금, 로열티, 세금 및 기타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1.2.1 산림경영사업체는 관련 되는 모든 요금, 세금, 목재권 또는 임차료, 로열티를 납기에 내야 한다.  
1.2.2 관련 세금 등을 납기에 지불하지 못한 산림경영사업체는 완불 계획을 관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1.3 CITES, ILO 협약, ITTA 및 생물다양성 협약 등 모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3.1 산림경영사업체는 관련 국제 협약에서의 법적, 행정적 의무사항을 알고 있어야 한다.  
1.3.2 산림경영사업체의 사업은 CITES, 생물다양성 협약,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비롯해 관련되는 협약의 취지를 준수해야 한다. (29, 87, 98, 100, 105, 111, 138, 182 및 기타 구속력 있는 협약).

**1.4 인증기관과 이해당사자는 법규, FSC 원칙과 기준 간에 상충하는 내용을 사례별로 검토해야 한다.**

1.4.1 산림경영사업체는 법률, FSC 원칙과 기준 및 국제조약 또는 협약 사이에 상충되는 것을 규명해야 한다

1.4.2 산림경영사업체는 법률, 규칙 및 FSC 원칙과 기준이 상충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제기관 및 관계당국과 공동 노력해야 한다.

**1.5 산림경영지역은 불법벌채나 무단점유 또는 기타 무허가 행위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5.1 산림경영단위는 산림경영자나 사용권을 갖는 현지주민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불법 벌채 및 기타활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5.2 대규모 경영체는 불법 벌채, 무단점유, 기타 무허가 행위를 관계당국에 서면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6 산림경영자는 FSC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장기적인 이행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1.6.1 대규모 경영체는 심사대상 산림에 대한 FSC 인증표준을 준수토록 하는 공개 가능한 정책 또는 서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6.2 산림경영사업체는 심사대상 산림 밖의 산림지역에서 FSC 원칙과 기준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1.6.3 산림경영사업체는 부분 인증과 인증 범위로부터 제외된 지역에 대해 현재의 FSC 정책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일정 부분 그 사업체가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모든 산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기준 2. 소유권, 사용권 및 책임**

토지와 산림 자원에 관한 장기적인 소유권 및 사용권을 명확히 정의하고, 문서화하고, 법적으로 확립해야 한다.

**2.1 토지의 장기 사용권에 대한 증거(예, 토지권리 증서, 관습권, 또는 임대계약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1.1 산림경영사업체는 토지를 경영하고 인증대상 산림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장기적 (최소한 1 회의 윤벌기 또는 벌기령) 법적 권리에 대한 증빙문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2 지역사회가 자유의사와 정보에 의거한 동의에 따라 산림경영을 타 기관에 위임하지 않은 한, 법적 또는 관습적인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가진 지역사회가 그들의 권리 또는 자원의 보호에 필요한 정도로 산림작업에 대한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

2.2.1 산림경영자는 모든 지역의 산림 자원에 대한 법적 또는 관습상의 모든 보유권 또는 이용권을 상세히 문서로 기록해야 한다.

2.2.2 산림경영사업체는 사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 활동에 대하여 지역사회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2.2.3 산림경영사업체의 계획 과정은 법적 또는 관습상의 보유권이나 사용권이 있는 지역사회나 당사자들의 참여를 포함해야 한다.

**2.3 소유권에 관한 주장이나 사용권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메커니즘을 활용해야 한다. 인증 평가 시 심각한 분쟁의 상황 및 상태를 명확하게 고려해야 한다.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중요한 분쟁이 있다면, 통상 인증심사 대상이 되지 못할 것이다.**

2.3.1 산림경영사업체는 보유권 주장 및 사용권에 대한 분쟁 해결에서 분쟁당사자를 존중하고 절차에 부합하는 메커니즘을 이용해야 한다.

2.3.2 산림경영사업체는 인증대상 산림에서 상당히 많은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중대한 분쟁에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2.3.3 산림경영사업체는 중대한 분쟁 해결 과정에서 상당한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

### **기준 3. 원주민의 권리**

원주민이 그들의 토지, 영토, 자원을 소유하고, 이용하고, 관리하는 원주민의 법적, 관습적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비록 이 원칙이 대한민국 잠정 표준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대한민국 내 FSC가 정의하는 원주민은 없다.

**3.1 원주민이 자유의사와 정보에 의거한 동의 하에 관리를 타 기관에 위임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주민이 그들의 토지와 영토에 대한 산림경영을 통제해야 한다.**

3.1.1 원주민들이 그들의 토지/영토 또는 산림자원에 대한 관습적 또는 법적 권리를 확립해 온 지역에 대해, 산림경영사업체는 산림자원(목재 및 비목재 임산물)에 대한 관습적/전통적 권리를 갖는 원주민이 누구 인지과 더불어 상호 합의된 협정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원주민의 권리가 무엇 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3.1.2 토지, 영토 혹은 관습적 권리를 주장하는 원주민들이 자유의사와 정보에 기초하여 동의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없이는, 어떠한 산림경영사업도 위의 3.1.1에 의해 규정된 지역에서 행해질 수 없다.

3.1.3 원주민들과의 협약사항은 존중되어야 한다.

**3.2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원주민의 자원 또는 사용권을 위협하거나 축소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산림을 경영해야 한다.**

3.2.1 산림경영사업체가 원주민들의 권리 및 자원을 위협한다는 어떠한 증거나 의도가 없어야 한다.

**3.3 산림경영자는 원주민에게 문화적, 생태적, 경제적 혹은 종교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지역을 원주민과 협력 하에 명확하게 확인하고,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3.3.1 토착 문화, 생태학적, 경제적 또는 종교적 중요성을 갖는 특별구역은 경영계획문서에 기록되어야 한다. 도면이나 산림 내에 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3.3.2 특별구역을 확정하는 정책입안이나 의결과정에 원주민이나 이들이 지명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3.3.3 특별구역은 경영 및 운영 계획에 규명되어야 한다.

3.3.4 특별구역은 산림 사업시 보호되어야 한다.

**3.4 산림작업 시 산림종 또는 산림경영체계의 이용과 관련하여 원주민이 소유한 전통지식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활용에 대해 원주민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산림작업이 착수하기 전에 자유의사와 정보에 기초한 동의 하에 그러한 보상을 정식으로 합의하여야 한다.**

3.4.1 상업적 목적으로 원주민들의 전통지식을 사용하는 경우, 보상 조건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합의가 있어야 한다.

3.4.2 전통지식의 사용에 대한 보상 체계는 원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산림사업의 개시 이전에 수립되어야 한다.

#### **기준 4.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노동자의 권리**

산림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장기적인 사회적, 경제적 복지를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도록 산림을 경영해야 한다.

**4.1 산림경영 구역내 혹은 인접지역에 위치한 지역사회에 고용, 훈련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1.1 지역사회와 거주민에게는 고용, 훈련 및 산림경영사업체에 대한 물품 공급의 견지에서 산림경영 활동에서 동등하거나 우선적인 기회와 편익이 부여되어야 한다.

**4.2 산림경영은 고용인과 고용인 가족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4.2.1 정규직 및 계약자의 임금과 혜택(의료, 퇴직, 보상, 주택, 식품)의 수준이 일반적인 지역 수준보다 미달되지 않고 상응해야 한다.

4.2.2 산림경영사업체는 작업자 안전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한다.

4.2.3 의료 및 안전 조치는 국가 최소 요구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4.2.4 작업자(직원과 계약자)는 담당임무와 사용하는데 적합한 안전장비가 지급되어야 한다(예를 들어, 지역표준이 중요하며 다음 항목을 지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안전모자, 청각보호기, 안전조끼, 안전화 및 기계톱 방지용 가죽바지).

4.2.5 산림경영사업체는 작업관련 사고는 물론 모든 안전 조치에 대한 기록을 갱신, 유지해야 한다.

4.2.6 산림경영사업체 정책과 시행에 있어서 고용, 승진, 해고, 보수 및 고용관련 사회보장 측면에서 평등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4.3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제 87 호, 제 98 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고용주와 자발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4.3.1 산림경영사업체는 시행과 정책에 있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 및 98 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작업자(직원과 계약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가입하고 단체협상에 참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4.4 경영계획의 수립과 작업 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산림작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과 집단(남녀모두)과의 협의가 계속되어야 한다.**

4.4.1 지역의 이해당사자 및 기타 이해 집단과 관련하여, 산림경영사업체는 산림경영 활동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그 평가는 사업의 규모와 강도에 따라 이루어진다.

4.4.2 산림경영사업체는 경영계획 및 사업 중에 지역사회의 의견을 고려하고 반영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4.4.3 산림작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과 집단 (남녀모두)과의 협의가 계속되어야 한다.

**4.5 지역주민의 법적 또는 관습적 권리, 자산, 자원 또는 생계의 영향을 주는 손실 및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만의 해결 및 공정한 보상의 제공을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한 손해 및 손실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5.1 산림경영사업체는 지역주민에게 손실 및 손해를 주지 않기 위해, 또한 법적 권리, 손해배상 및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한 불만 해소를 위해 모든 합당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4.5.2 불만 해소 및 피해보상 또는 손해배상액 결정을 위한 절차가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주: 토지보유권(예를 들어 재산권이나 사용권) 이의신청 해결에 대해서는 기준 2.3 을 참조)

## **기준 5. 산림이 제공하는 편익**

산림관련 작업 시, 경제적 타당성과 다양한 환경적, 사회적 편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림의 다양한 임산물 및 산림서비스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산림을 경영해야 한다.

**5.1 생산에 필요한 모든 환경적 비용, 사회적 비용, 사업 비용을 고려하고, 산림의 생태적인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확보하면서, 경제적인 타당성을 갖도록 산림을 경영해야 한다.**

5.1.1 예산은 인증 지위의 유지에 필요한 운영비용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회적 비용 조달을 포함한다(예를 들어 경영계획, 도로 유지보수, 조림 사업, 장기적인 산림건강, 성장 및 수확량 모니터링 및 보전을 위한 투자).

5.1.2 운영예산에서 예상 수익은 근거가 충분한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

**5.2 다양한 임산물의 최적 이용 및 지역에서의 가공을 촉진시키도록 산림을 경영하고, 마케팅 사업을 해야 한다.**

5.2.1 산림경영사업체는 각 수종 및 목재의 "최대 및 최선 이용"을 추구해야 한다.

5.2.2 산림경영사업체는 출현빈도가 높고 덜 알려져 있거나 흔히 사용하지 않는 수종의 상업적 및 생계유지 용도의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5.2.3 산림 이용 및 가공에 있어 비목재임산물(NTFP, Non Timber Forest Product)이 고려되어야 한다.

5.2.4 가능하면 현지 가공을 장려해야 한다.

**5.3 벌채나 현장 가공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잔재를 최소화하고, 다른 산림자원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산림을 경영해야 한다.**

5.3.1 벌채기술은 원목 파손, 목재 품질저하 및 임분과 기타 자원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5.3.2 벌채, 현장 가공 및 벌출을 통해 발생하는 폐잔재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주: 산림자원에 대한 피해 평가는 원칙 6 을 참조)

**5.4 하나의 특정 임산물에 대한 의존을 피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다양화하도록 산림을 경영해야 한다.**

5.4.1 산림경영사업체는 제품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시장과 제품의 개척을 지원해야 한다(기준 5.2 참조).

5.4.2 산림경영사업체는 부가가치 높은 현지 가공을 지원해야 한다.

**5.5 산림작업 시 산림서비스와 유역 및 내수면어업과 같은 자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하거나, 향상시켜야 한다.**

5.5.1 산림경영사업체는 도시유역, 상업적 및 휴양적 어업(또는 하류 어로에 물 공급), 경관, 지역 생물다양성에 기여, 휴양 및 관광 등 지정된 산림 지역과 관련된 모든 범주의 산림 서비스를 보호해야 한다.

5.5.2 산림경영사업체는 국내법규 또는 우수경영사업의 요건에 근거하여 수로, 하천, 웅덩이, 샘 및 호수/연못을 따라 하안지대를 보호해야 한다.



5.5.3 산림경영사업체는 유역과 어업 같은 자원들과 산림 서비스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하안보호지대를 도면에 표시해야 한다.

#### **5.6 임산물의 수확은 영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6.1 사업의 규모와 강도에 적합한 수준에서, 지정된 산림의 수종별 정기 총목재생장량은 경험적 자료와 문헌을 통하여 추정되어야 한다.

5.6.2 허용 가능한 벌채 수준은 성장 및 수확량에 대하여 과대추정이 안되고 잘 기록된 최신추정치를 근거로 해야 한다.

5.6.3 벌채는 기간별허용가능벌채량 (예: 연년허용가능벌채량)에 기초하고, 실제 벌채량은 장기간에 걸쳐 계산된 축적보충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기준 6.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물다양성과 그와 관련된 가치, 수자원, 토양 및 독특하고 취약한 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고,그렇게 함으로써 산림의 생태적 기능과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산림을 경영해야 한다.

**6.1 산림경영의 규모와 강도 및 영향을 받는 자원의 속성에 따라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고 적절하게 경영체계에 반영해야 한다. 평가 시 현장 가공시설이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고 경관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 해당지역을 교란하는 작업착수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6.1.1 환경평가는 경영계획 단계에서 완료되어야 한다.

6.1.2 환경평가는 현장교란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행되어야 한다..

6.1.3 현장 가공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통제되어야 한다(예: 폐기물, 건축 영향 등).

6.1.4 산림경영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즉, 산림경영단위 내부나 근처에서 산림 작업의 누적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6.1.5 소규모저강도(SLIMF) 산림경영사업체에만 적용됨(주: 상기 지표들은 적용되지 않음) 어떤 사업이건 시작하기 전에 산림경영사업체는 자신의 활동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것을 최소화하도록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 이 때 평가는 만일 법적으로 요구되어지지 않는다면, 꼭 문서화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6.2 희귀, 위협, 멸종위기 종과 그들의 서식처(예, 보금자리 및 식이 장소 등)의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수립해야 한다. 산림경영의 규모와 강도, 영향을 받는 자원의 특수성에 따라 적합하게 보전구역 및 보호지역을 지정해야 한다. 부적절한 수렵, 고기잡이, 덫 설치 및 채집을 통제해야 한다.**

6.2.1 희귀, 위협, 멸종위기 종과 그들의 서식처(예, 보금자리 및 식이 장소 등)가 있을만한 후보지는 가용한 최선의 정보를 토대로 평가되어야 한다.

6.2.2. 지역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위협 및 멸종 위기에 처한 종에 관한 목록 (예를 들어 CITES 부록 1, 국가목록) 에 등재되어 있는 수종은 벌채하지 말아야 한다.

6.2.3 경영 규모와 강도에 적합한 수준에서, 보전지대, 보호지역 또는 기타 보호조치는 희귀, 위협, 멸종위기 종과 그들의 서식처 보호를 위해 기술적으로 건전한 요구조건에 근거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6.2.4 보전지대는 반드시 도면과, 가능할 경우 지상에 표시하도록 한다.

6.2.5 산림 작업 중에 보전지대, 확인된 종 및 그 서식지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절차를 집행 하여야 한다.

6.2.6 산림에서의 수렵, 낚시, 올가미 및 비목재임산물(NTFP) 수집은 통제되어야 한다.

6.2.7 소규모저강도(SLIMF) 산림경영사업체에만 적용됨: (주: 상기 6.2.1-6.2.5 지표들은 적용되지 않음) 희귀, 위협, 멸종위기 종과 그들의 서식처에 대한 정보가 있을 경우에산림경영사업체는 이들 정보를 도면에 표시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6.3 아래와 같은 생태적 기능과 가치를 자연 그대로 유지하고 증진시키고 복원해야 한다.**

- a) 산림 갱신 및 천이
- b) 유전, 종, 생태계 다양성
- c) 산림생태계의 생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순환 과정

6.3.1 산림경영자는 구체적인 사이트 자료나 이미 출판된 지역 산림 생태계에 대한 분석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한다.

자료는 다음 항목과 관련하여 산림경영단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 산림 갱신 및 천이
- 유전, 종, 생태계 다양성
- 산림생태계의 생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순환 과정

6.3.2 산림경영시스템은 6.3.1의 자료에 근거하여 산림경영단위의 생태적 기능과 가치를 유지, 향상 또는 복원해야 한다. 경영 시스템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산림생태계기능과 구조, 다양성, 천이에 적합한 조림 및/또는 기타 경영 시스템 적절할 때, 퇴화된 사이트를 위한 복원 프로그램 만일 자료가 풍부한 조림나 인공재조림이 유전, 종, 생태계 다양성을 증진하거나 복원할 것임을 보여 주지 못한다면, 자연갱신.

**6.4 경관 내에 현존하는 생태계의 대표적인 표본의 규모가 산림작업의 규모나 강도, 또는 영향 받는 자원의 특수성에 적합하게 도면에 표시되어야 하고, 자연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6.4.1 경관 내에 현존하는 생태계의 대표적인 표본은 핵심 생물학적 영역의 규명 및/또는 환경 이해당사자, 지방정부 및 과학단체와의 자문을 얻어서 자연상태로 보호되어야 한다.

6.4.2 전문가와 함께, 산림 복원과 보호 활동을 명시, 기록 및 이행하여야 한다.

6.4.3 소규모저강도(SLIMF) 산림경영사업체에만 적용됨: (주: 상기 지표들은 적용되지 않음) 산림경영단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생태계의 대표적 표본은 보호되어야 한다.

**6.5 침식을 방지하고, 임도건설 및 기타 모든 기계적인 교란시의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문서로 준비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6.5.1 부정적인 환경영향의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모든 산림조업은 문서화된 지침서를 필수로 한다. 이 지침서는 산림경영자와 관리자가 행할 수 있는 가능한 시업을 규정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조업 지침은 국가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경영시행규정을 준수하거나 그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6.5.2 도면 및/또는 작업계획서는 토양 및 수자원 관리와 보호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이 가능한 규모로 작성되어야 한다.

6.5.3 벌목이나 도로건설에 앞서 지형도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한다.

6.5.4 지형도는 반드시 전천후 벌채 또는 건기 벌채만 적합한 지역들을 표기하여야 하며 벌출로(또는 운재로), 적재 진입로(또는 야적장), 주요 집재로, 배수 구조, 완충지대 및 보전지역의 위치를 표기하여야 한다.

6.5.5 산림경영사업체 직원 및 계약자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지침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6.5.6 산림에서의 도로건설, 유지보수 및 폐쇄 표준이 준수되어야 한다.

**6.6 병해충 관리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채택할 것을 권장하며, 화학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의 Type 1A, 1B 및 염소계 탄화수소 살충제 농약, 잔류성이 높고 유독한 물질, 그 유독물질이 생물적으로 활성화되어 지속가능한 이용을 초과하여 먹이사슬 과정에 축적되는 농약, 국제협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농약 등은 금지해야 한다.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에는 건강 및 환경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장비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6.6.1 산림경영자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림 체계, 병해충종합관리(IPM) 시스템, 그리고 식생 조절 전략을 적용해야 한다. 화학약품은 비화학적 경영방식이 비효율적이거나 가격이 적절치 않다고 증명되었을 때에만 사용된다.

6.6.2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산림경영사업체는 화학약품의 완전한 재고목록을 제공하고, 보관지역이나 기타 시설물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결과는 재고목록이 완전하고 정확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제품명, 사용 위치와 방법, 사용된 화학 약품의 총량 및 사용일자를 포함하여 산림경영사업체가 사용하는 모든 화학약품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안전한 취급, 사용 및 보관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직원 및 계약자는 취급, 사용 및 보관 절차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 **6.7 화학물질, 용기, 연료나 기름 등 액상 및 고형 무기폐기물을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경영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처리해야 한다.**

6.7.1 화학물질, 용기, 액상 및 고형 폐기물은 산림 사업이나 가공시설에서 발생하였는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현장에서 벗어난 곳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 **6.8 생물학적 방제제의 사용을 문서화하고 최소화하고 모니터하고 있으며, 국내 법규 및 국제적으로 용인된 과학에 기초한 규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유전자 변형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6.8.1 생물학적 방제제의 사용은 문서로 기록되고, 최소화하고, 모니터 되고,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6.8.2 유전자 변형체(GMO)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 **6.9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외래종의 이용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6.9.1 외래종의 이용은 억제되고 세심하게 통제되어야 한다. 즉 외래종을 이용할 때에는 그에 대한 정당성과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고,(예: 환경적인 이점) 환경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6.9.2 외래종이 심어진 곳에서, 인공조림지 외부에 자생적인 갭신, 비정상적인 고사, 병해충 발생 또는 기타 환경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6.10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산림을 인공조림지 혹은 타용도로 전용해서는 안된다.**

- a) 산림경영구역 중 극히 적은 면적만이 포함되는 경우,
- b)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구역이 아닌 경우,
- c) 산림경영구역에서 명백하고, 실질적이며, 추가적이고, 확실하고, 장기적인 보전편익을 제공하는 전용의 경우.

6.10.1 산림경영사업체는 산림 혹은 위험에 처한 비산림 서식지를 인공림이나 비산림 토지용도로 전용해서는 안된다. 만약에 전용이 기준 6.10.2 부터 6.10.5 를 충족시킨다면 가능하다.

6.10.2 전용이 있을 경우에도 **규모에 있어 매우 제한적이어야 하며**, 어느 5 년간의 기간 동안에 산림경영단위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FSC-DIR-20-007-ADV-10 참조).

6.10.3 **만일 전용이 있게 되면, 산림경영자는 해당 전용이 산림경영단위 전체에 걸쳐 명확하고 장기적인 보전 편익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6.10.4 만일 전용이 있게 되면, 인공림이나 비산림 이용은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을 대체할 수는 없다.

6.10.5 인공림이나 비산림 이용은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을 대체할 수는 없다.

## **기준 7. 경영계획**

사업의 규모 및 내용에 적합한 경영계획을 작성하고, 이행하며, 변경해야 한다. 장기경영목표와 이를 달성하는 수단을 명시해야 한다.

**7.1 경영계획 및 관련 문건은 다음 사항을 제공한다:**

- a) 경영목표
- b) 경영하고 있는 산림자원과 환경상 제약에 대한 정보, 토지이용, 소유권 현황, 사회경제적 여건, 인접토지현황에 대한 정보
- c) 해당 산림의 생태와 자원조사 정보에 의거한 시업체계 및/또는 기타 경영체계에 대한 정보

- d) 연간벌채율과 수종선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
- e) 산림생장 및 산림동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규정
- f) 환경 평가에 기반한 환경적 안정장치
- g) 희귀, 위협, 멸종위기종의 동정 및 보호를 위한 계획
- h) 보호지역, 시업계획, 토지소유권 등 산림자원에 관한 정보를 설명한 도면, 수확방법 및 사용 장비의 정당성에 대한 기술.

7.1.1 산림경영사업체 경영계획, 부록 또는 참조문건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 a) 경영 목표
- b) 목표 수종
- c) 경영대상 산림자원, 환경적 제약, 토지 이용 및 소유권 현황, 사회경제적 상황 및 인접토지의 개요에 대한 기술
- d) 대상 산림의 생태 및 산림자원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에 근거한 조림 및/또는 기타 경영체계에 대한 기술
- e) 여러 가지의 벌채기술 및 장비 사용에 대한 기술 및 당위성
- f) 현장 산림자료 또는 지역 산림생태와 조림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 산림경영 처방 및 산림경영 처방에 대한 조림생태학적인 이론적 근거에 대한 기술과 당위성
- g) 임산물(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목재나 비목재 임산물)의 수확율 및 종의 선택(정당성 포함)
- h) 희귀하거나 위협받고 있어서 멸종 위기에 처한 종 및/또는 그 서식지 확인 및 보호를 위한 조치
- i) 임형, 수로와 배수, 구획/블록, 도로, 원목 집하장 및 가공 현장, 보호지역, 고유한 생물학적 또는 문화적 자원, 그리고 기타 계획된 경영활동을 포함하여 산림자원에 대한 설명 도면
- j) 환경평가에 근거한 환경보호 수단(기준 6.1 참조)
- k) 산림 생장, 갱신 및 동태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7.1.2 비목재 임산물 자원 및 이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계획 중에 이들에 대한 관리가 명시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7.1.3 제시된 도면은 정확하고, 산림 활동에 지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기준 6.5 참조).

7.1.4 경영계획이나 관련 연간 벌채계획이 직원에게 제공되어 산림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7.1.5 소규모저강도(SLIMF) 산림경영사업체에만 적용됨: (주: 상기 지표들은 적용되지 않음)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는 경영계획이 있어야 한다.

a) 경영 목표

b) 산림 현황

c) 목표 달성 방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벌채방법과 갱신방법(개벌, 택벌, 간벌)

d) 지속 가능한 벌채한계량(이는 FSC 기준 5.6 에 부합해야 한다)

e) 계획의 환경/사회적 영향

f) 희귀종 및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의 보존

g) 보호지역, 계획된 경영 및 토지소유권을 나타내는 산림 도면

h) 계획기간

**7.2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모니터링 결과나 새로운 과학 및 기술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경영계획을 정기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7.2.1 경영계획의 변경/수정에는 기술적으로 건전하고 재정적으로 현실성 있는 시간계획이 있어야 한다.

7.2.2 경영계획(및/또는 연간 운영계획) 변경/수정은 적기에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7.2.3 경영계획 변경 시 모니터링의 결과 또는 조림, 환경 및 사회경제적 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학기술 정보를 담아야 한다.

7.2.4 소규모저강도(SLIMF) 산림경영사업체에만 적용됨 (주: 상기 지표들은 적용되지 않음) 경영계획은 최소한 5 년마다 재검토하여 변경되고, 필요하면 장래의 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해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7.3 산림노동자는 경영계획 이행을 위한 적절한 훈련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7.3.1 경영계획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서 산림 작업자의 공식, 비공식 훈련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7.3.2 대규모 산림경영사업체의 경우 경영계획 및 이행에 연관된 공식적인 훈련계획이 있어야 한다.

**7.4 정보의 비밀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산림경영자는 기준 7.1 에서 열거한 사항을 포함하여 경영계획의 주요 요소에 대한 개요를 공개해야 한다.**

7.4.1 산림경영사업체는 기준 7.1 에 나열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경영계획의 개요를 공개해야 한다.

7.4.2 소규모저강도(SLIMF) 산림경영사업체에만 적용됨 (주: 상기 지표들은 적용되지 않음): 적어도 산림경영사업체는 자신의 산림경영 활동에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예: 주변 토지소유자)에게 경영계획의 관련 부분에 대한 접근을 기꺼이 허용해야 한다.

**기준 8. 모니터링 및 평가**

산림상태, 임산물 생산량, 임산물 가공, 유통단계의 추적체계, 경영활동 및 이러한 활동의 사회적, 환경적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산림경영의 규모와 내용에 걸맞게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8.1 영향을 받는 환경의 상대적인 복잡성과 취약성뿐만 아니라 사업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 모니터링의 빈도와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모니터링의 절차는 변화의 결과 및 평가가 비교가능 하도록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관적이고, 반복 가능하여야 한다.**

8.1.1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를 위해 일관성이 있고 반복이 가능한 절차에 입각한 계획과 설계가 있어야 한다.

8.1.2 모니터링의 빈도와 강도는 환경 영향의 규모와 복잡성과 경영할 때 자원의 취약성을 근거로 해야 한다.

8.1.3 소규모저강도(SLIMF) 산림경영사업체에만 적용됨 (주: 상기 지표들은 적용되지 않음):

산림경영사업체는 벌채 활동 및 재조림과 관련하여 정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한다.

**8.2 산림경영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조사 및 자료 수집을 해야 한다.**

- a) 수확된 임산물의 물량.
- b) 산림의 생장율, 갱신 및 상태.
- c) 동식물의 구성상태와 관측된 변화
- d) 벌채 및 기타 작업의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 e) 산림경영의 비용, 생산성 및 효율성.

8.2.1 모니터링 계획은 기술적으로 건전하고 아래 항목에 대한 관찰된 변화를 확인하고 기술해야 한다:

- 조림(전형적으로 적절하고 지속적인 산림목록체계의 일부로서, 생장율, 갱신 및 산림상태)
- 단기소득 임산물을 포함한 상업적인 수확
- 환경(식물군, 동물군, 토양 및 수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 (해충의 발생, 침입 수종, 위험에 처한 조류의 번식지)
- 사회경제적 측면(산림경영비용, 모든 임산물의 생산량 및 지역사회와 작업자와의 관계 또는 근로 조건의 변화, 사고발생률)
- 확인된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의 속성.

8.2.2 소규모저강도(SLIMF) 산림경영사업체에만 적용됨 (주: 상기 지표들은 적용되지 않음):

산림경영사업체는 최소한 다음에 관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기록해야 한다:

- 임산물 수확량
- 확인된 모든 보전가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 외래 침입종
- 수종의 생장량 및 갱신

- 수확 후 침식에 대한 조사 및 잔존 단면적의 추정,
- 주기적인 산림조사 (매 10 년).

**8.3 모니터링 및 인증기관이 임산물 가공, “관리의 연속성(CoC)”라 알려진 과정, 즉 임산물을 원산지로부터 추적할 수 있도록 산림경영자는 문건을 제공해야 한다.”**

8.3.1 수확된 임산물의 물량 및 원산지 자료가 산림에서, 운송중에, 중간 보관창고(예를 들어 원목 야적장)와 산림경영사업체가 관리하는 가공 공장에서 (무게로, 재고량으로, 크기로 제어해서) 제공되어야 한다 (소규모저강도(SLIMF) 산림경영사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8.3.2 인증된 제품의 판매와 관련한 송장 및 기타 문서에는 CoC 코드가 올바른 형태로(예를 들어, SWFM/COC-XXXX) 기재되어야 한다.

8.3.3 인증된 임산물은 판매 지점까지 마크나 라벨, 별도의 보관증 및 수반되는 송장을 통해 일반임산물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8.3.4 소규모저강도(SLIMF) 산림경영사업체에만 적용됨 (주: 지표 8.3.1 과 8.3.3 은 적용되지 않음): 산림에서 판매지점까지 상품이 추적될 할 수 있는 문서가 제공되어야 한다.

**8.4 경영계획의 이행 및 변경 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8.4.1 산림경영사업체는 모니터링 결과가 경영계획의 변경에 반영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소규모저강도에 대해서는 기준 7.2 참조).

8.5 정보의 비밀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산림경영자는 기준 8.2 에서 열거한 사항을 포함하여 모니터링 지표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의 개요를 대중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8.5.1 대규모 경영체의 경우 모니터링 결과는 개요와 기타 공개 문건에 반영되어야 한다.

8.5.2 중규모 경영체 및 소규모저강도(SLIMF) 산림경영사업체에만 적용됨: (주: 상기 지표는 적용되지 않음) 요구가 있을 때엔, 산림경영사업체는 산림경영사업체의 산림경영활동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예를 들어 주변 토지소유자)에게 경영계획의 관련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

## **기준 9.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의 유지**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지역 내에서의 경영활동은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을 정의하는 속성을 유지하거나 향상시켜야 한다.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에 관한 결정은 예방차원의 접근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9.1 사업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이 갖고 있는 속성의 존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9.1.1 산림경영사업체는 높은 보전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한 평가는 다음 같은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보전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도면의 컨설팅 수행;
- 지정된 산림지역에 관한 산림조사 중 수집된 1 차 및 2 차 자료에 대한 산림경영사업체 직원, 컨설턴트 또는 조연자에 의한 검토;
- 환경전문가와 생물학자, 원주민과 지역사회 및 전문가 등과의 면담;
- 높은 보전가치를 위협하는 존재에 대한 증거문건,
- 높은 보전가치 또는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에 대한 위협이 존재할 경우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파악.

9.1.2 대규모 경영체의 경우 산림경영사업체는

- 높은 보전가치 또는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을 확인하는 평가서를 작성하고, 그 보호전략을 제안해야 한다.

•높은 보전가치 위협 및 보호에 대처하기 위해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 평가서 및 권고 사항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이고 기술적으로 적격한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높은 보전가치 또는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 보호 및/또는 위협 감축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9.1.3 소규모저강도(SLIMF) 산림경영사업체에만 적용됨: 높은 보전가치 또는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확인을 위해 환경 이해당사자, 정부 또는 과학자와 협의해야 한다. 이는 실제 인증심사 중에 할 수 있다. 만약 높은 보전가치 또는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이 존재하면 산림경영사업체는 그 가치를 보호하거나 위협을 감소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9.2 인증을 위한 협의과정 시 보전속성의 확인과 그 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옵션)에 반드시 중점을 두어야 한다.**

9.2.1 산림경영사업체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자문을 구할 때 보전 속성의 유지 또는 위협 감소를 위해 제안된 전략뿐만 아니라 확인된 보전 속성들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

9.2.2 대규모 경영체의 경우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을 위한 전략개발을 위한 이해당사자와의 자문 그리고 그 자문에 대응하여 취한 조치들을 문서화해야 한다.

**9.3 경영계획에는 보전 속성이 존재하는 경우 예방차원의 접근방식에 따라 보전속성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이행해야 한다. 공개된 경영계획 개요에 이러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9.3.1 높은 보전가치 또는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이 존재하면, 계획 문서에는 높은 보전가치를 보호 내지 복원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를 설명하는 현장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9.3.2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공개 문서 또는 산림경영사업체 경영계획 요약에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9.4 보전 속성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9.4.1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는 산림경영사업체의 계획, 모니터링 및 보고 절차에 반영되어있어야 한다.

## **기준 10. 인공림**

원칙 및 기준 1~9 와 원칙 10 및 그 기준에 따라 인공림을 계획하고 경영해야 한다. 인공조림은 다양한 사회 및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전세계 임산물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공헌하지만, 천연림의 경영을 보완하고, 천연림의 이용압력을 감소시키고 천연림의 복원 및 보전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10.1 천연림의 보전 및 복원 목표를 포함한 인공림의 경영목표를 경영계획에 명확히 기술하고, 경영계획의 이행 시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

10.1.1 경영계획에는 나무를 심는 목표가 명확해야 하고, 더불어 그 지역에서 나무를 심는 것과 조림의 관계, 사회경제학적 현실과 환경학적 현실(예를 들면, 산림 보전 및 복원간의 관계)가 명확히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10.1.2 경영계획에는 천연림의 보전과 복원을 위한 경영 목표가 기술되어야 한다.

10.1.3 산림경영 활동에서 특히 천연림 보전 및 복원과 관련한 경영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10.2 천연림의 보호, 복원 및 보전을 촉진시켜 천연림에 대한 각종 압력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인공림을 계획하고 배치해야 한다. 작업의 규모에 따라 인공림을 배치할 시 야생동물 이동통로, 계류지역, 임령 및 벌기령이 다른**

**임분을 모자이크식으로 배치해야 한다. 천연경관내의 임분 패턴과 조화롭게 인공림의 규모와 배치가 결정되어야 한다.**

10.2.1 산림경영사업체는 소유지 내의 중요 천연림의 보호, 복원 및 보전에 대한 의무 이행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10.2.2 지역에 따라 우수 경영사업 또는 지방 법규에 따라 수로 및 수변에 완충지대가 설정되어야 한다. 완충지대는 반드시 도면에 표시되어야 한다.

10.2.3 산림경영사업체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어서 인공림 전역에 걸쳐 적절한 위치에 야생동물 서식지와 이동통로를 설정해야 한다.

10.2.4 인공림은 경관 특성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즉, 설계는 지역 내에서 자연적인 교란의 규모와 강도 그리고 조림 및 벌채 방법을 토대로 해야 한다).

**10.3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 안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인공림의 다양성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한 다양성에는 경관 내 경영단위의 규모 및 공간적 배치, 종의 수 및 종의 유전적 구성, 영급과 구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10.3.1 인공림 경영은 산림계획의 크기와 구성, 수종, 유전적 다양성, 영급 및 구조를 다양화함으로써 경관 다양성을 유지 내지 향상시켜야 한다.

10.3.2 그 지역에 고유한 산림 수종에 관한 조림 및/또는 관련 연구가 강조되어서 수행되어야 한다. (주: 기준 6.4 와 6.8 참조 )

**10.4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적합성과 경영목표 적절성을 토대로 조림수종을 선정해야 한다. 생물다양성의 보존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공림의 조성과 황폐된 생태계의 복원에 외래종보다 고유종을 더 선호해야 한다. 외래종은 고유종보다 성과가 더 클 경우에만 도입해야 하고, 비정상적인 고사율, 병해충 발생 및 부정적인 생태적인 영향을 탐지하기 위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한다.**

10.4.1 인공림 수종은 현장 조건(토양, 지형 및 기후)과 경영목표에 대한 적합성을 근거로 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10.4.2 외래종이 선정된 경우 산림경영사업체는 그 선정의 이유가 외래종의 성과가 고유종의 성과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정당성을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

10.4.3 현장 시험 및/또는 경험상 생태학적으로 현장에 잘 적응하고, (혹시 있으면) 침입 속성을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될 때까지는 어떠한 수종이든 대규모로 심지 말아야 한다.

10.4.4 외래종이 쓰였을 때엔, 인공림을 벗어난 자연갱신, 비정상적인 고사, 병해충 발생 또는 기타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문서화해야 한다.

**10.5 전체 산림경영지역 중, 인공림의 규모에 적합하고, 지역적인 표준에 따라 결정되는 일부분을 천연림으로 복원하기 위해 경영해야 한다.**

10.5.1 기존 자연생태계의 대표적인 표본은 이해당사자, 지방정부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중요 생물 지역의 확인을 근거로 해서 자연상태로 보호 내지 복원되어야 한다. (주: 기준 6.4 참조.)

10.5.2 소규모저강도(SLIMF) 산림경영사업체에만 적용됨 (주: 상기 지표는 적용되지 않음): 인공림 설계와 경영은 생태적가치, 그 중에서도 보전 속성이나 보호되는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향상시켜야 한다.

**10.6 토양 구조, 비옥도 및 생물학적 활동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기적인 토질악화 또는 수질, 수량에 대한 악영향 또는 기존 물질의 심각한 변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벌채방법 및 벌채율, 간선 임도 및 집재로 시공 및 유지 방법, 조림수종을 선택해야 한다.**

10.6.1 토양 구조, 비옥도 및 생물학적 활동 측면에서 토양을 유지 내지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6.2 인공림 설계와 경영은 토양오염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10.6.3 인공림 활동은 수질을 떨어뜨리거나 지역 수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10.6.4 토양이나 수자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될 경우 산림경영사업체는 그러한 영향을 감소 내지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7 해충, 병, 산불 및 침입종의 유입을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종합적인 병충해 관리가 화학적 살충제 및 비료보다는 오히려 예방 및 생물학적 방제방법에 중점을 두어 경영계획에 일부분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양묘장을 포함한 인공림 관리 시 화학살충제와 비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화학물질의 사용은 기준 6.6 과 6.7 에서도 다루고 있다.**

10.7.1 산림에서 해충, 병, 산불 및 침입종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7.2 산불 예방 및 방지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10.7.3 중요 해충을 파악하고, 허용 가능한 피해 또는 방제 활동의 경계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는 종합 해충관리계획이 존재해야 한다.

10.7.4 산림경영사업체는 화학비료와 살충제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정책과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한다.

**10.8 사업의 규모와 다양성에 따라 인공림의 모니터링 시 원칙 8, 6 및 4 에서 다른 요소들 외에도 현지내, 현지외 생태적인, 사회적인 영향(예를 들면, 천연갱신, 수자원 및 토양비옥도에 대한 영향, 지역사회의 복지, 사회적 복리에 대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대면적 조림이 생태적으로 그 지역에 잘 적응하고, 다른 수종에 침해를 주지 않고 다른 생태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지역차원의 실험에서 밝혀지기 전까지는 어느 한 수종의 대면적 조림을 지양해야 한다. 인공림을 위한 토지구입 시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 특히 지역사회 소유, 이용 혹은 접근에 대한 권리의 보호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0.8.1 모니터링은 인공림 활동이 현장 내외에 미칠 수 있는 생태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기준 8.2 참조).

10.8.2 소규모저강도(SLIMF) 산림경영사업체에만 적용됨(주 : 상기 지표는 적용되지 않음) :

산림경영사업체는 환경 또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문서화하고, 이들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계획하고 이행해야 한다.

10.8.3 인공림 조성을 위한 토지 구매나 토지 임차가 지역사회나 지역주민의 자원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주: 외래종 또는 침입종에 대해서는 기준 10.4 를 참조)

**10.9 통상 1994 년 11 월 이후 천연림 지역을 전환하여 조성한 인공림은 인증 대상이 되지 못한다.**

**경영자/소유자가 전환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인증이 허용될 수 있다.**

10.9.1 인공림은 현행 경영자/소유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 책임이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1994 년 11 월 이후 천연림에서 전용된 토지에 조성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주: 기준 6.10 참조.)

**부록 1: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산림법 및 행정적 요구사항 목록**

Name of Country (국가명)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Category (카테고리)	Name of law/regulation (법률/규정 명칭)
<b>1. Legal rights to harvest (합법적인 수확 권리)</b>	
<b>1.1 Land tenure and management rights</b> (토지소유권 및 경영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n National Forest Management)</li> <li>②산림조합법, -시행령 (Act and Enforced Ordinances on National Forestry Cooperatives Federation)</li> <li>③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Forest Land Management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li> <li>④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n Establishment and Promotion of Forest Arboretum)</li> <li>⑤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n Promotion of Forestry and Mountain Villages)</li> </ul>
<b>1.2 Concession licenses</b> (양여 면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n National Forest Management)</li> <li>②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Act on Sustainable Utilization of Timber)</li> <li>③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n Promotion of Forestry and Mountain Villages)</li> </ul>
<b>1.3 Management and harvesting planning</b> (경영 및 수확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n National Forest Management)</li> <li>②산림기본법, -시행령</li> </ul>

	<p>(Framework Act and Enforced Ordinances on Forest)</p> <p>③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n Promo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p> <p>④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Forest Land Management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p>
1.4 Harvesting permits (수확 허가)	<p>①사방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Erosion Control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p> <p>②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n Promo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p> <p>③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Forest Land Management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p> <p>④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n Promotion of Forestry and Mountain Villages)</p>
<b>2. Taxes and fees (세금 및 수수료)</b>	
2.1 Payment of royalties and harvesting fees (로열티 및 수확 수수료의 지불)	<p>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n National Forest Management)</p> <p>②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Forest Land Management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p>
2.2 Value added taxed and Other sales taxes (부가가치세 및 매출세)	<p>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Value-Added Tax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p>
2.3 Income and profit taxes (소득 및 소득세)	<p>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n Promo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p>
<b>3. Timber harvesting activities (목재 벌채 행위)</b>	
3.1 Timber harvesting	<p>①사방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p>

<p>regulations (목재 벌채 규정)</p>	<p>(Erosion Control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p> <p>②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Forest Land Management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p> <p>③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n Promotion of Forestry and Mountain Villages)</p>
<p>3.2 Protected sites and species (보호구역 및 생물종)</p>	<p>①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Act and Enforced Ordinances on Protection of BaekduDaegan Mountains System)</p> <p>②산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n Forest Protection)</p> <p>③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n Promo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p> <p>④소나무재선충방제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n Pine Wilt Disease Prevention)</p> <p>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n Wildlife Conservation and Management)</p> <p>⑥자연공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Natural Park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p> <p>⑦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p> <p>⑧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Framework Act and Enforced Ordinances on Environmental Policy)</p>
<p>3.3 Environmental Requirements (환경적 요구사항)</p>	<p>①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n Promo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p>
<p>3.4 Health and safety</p>	<p>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p>

(건강 및 안전)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3.5 Legal employment (합법적인 고용)	①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규칙 (Labor Standards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②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③청원산림보호조직원배치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n Distribution of Special Employees for Forest Protection)
4. Third parties' rights (제3자의 권리)	
4.1 Customary rights (관습법)	①민법 (Civil Act)
4.2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자유로운 사전통보승인)	①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Act and Enforced Ordinances on Protection of BaekduDaegan Mountains System) ②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Forest Land Management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4.3 Indigenous peoples rights (원주민의 권리)	①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Act and Enforced Ordinances on Protection of BaekduDaegan Mountains System) ②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Forest Land Management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5. Trade and transport (거래 및 운송)	
NOTE : This section covers requirements for forest management operations as well as processing and trade. (참고 : 본 절은 산림관리작업 뿐 아니라 가공 및 거래에 관한 요구사항들을 포괄한다.)	
5.1 Classification of species, quantities, qualities (생물종, 수량, 질의 분류)	①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n Promo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5.2 Trade and transport	①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p>(거래 및 운송)</p>	<p>(Act on Sustainable Utilization of Timber)          ②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n Promo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p>
<p>5.3 Offshore trading and transfer pricing          (국제거래 및 이전가격)</p>	<p>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on Promo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p>
<p>5.4 Custom regulations          (관세 규정)</p>	<p>①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Customs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p>
<p>5.5 CITES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취급에 관한 국제조약)</p>	<p>①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nd Enforced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p>

## 부록 2: 대한민국이 비준한 다국간 환경협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 (ILO)

- 바젤협약 (1994 년 3 월 가입),
- 몬트리올 의정서(1992 년 5 월 가입),
- 기후변화 방지협약(1993 년 12 월 47 번째로 가입, 1994 년 3 월 발효),
- 생물다양성보존협약(1992 년 6 월 가입, 1994 년 10 월 비준서 기탁, 1995 년 1 월 발효),
- 런던협약 (1992 년 가입),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1993 년 7 월 가입, 10 월 발효),
- 람사협약 (1997 년 3 월 가입),
- 사막화방지협약(1999 년 8 월 156 번째로 가입),
- 국제식물보호협약 (1953 년 12 월 가입, 같은 달 발효)
-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역 식물보호협정 (1981 년 11 월 가입, 같은 달 발효)
-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1988 년 9 월 가입, 12 월 발효)
- 국제열대목재협정 (1983 년) (1985 년 6 월 가입, 같은 달 발효)
- 대한민국이 비준한 ILO 협약 (2008.6.30. 현재 24 개)

비준 일자	협약 명
2008.02.20	제 155 호 산업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협약
2008.02.20	제 187 호 직업상의 안전 및 건강촉진에 관한 협약
2007.04.04	제 185 호 선원의 신분증명서(개정)에 관한 협약
2007.04.04	제 162 호 석면 사용시 안전에 관한 협약
2003.04.11	제 170 호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안전에 관한 협약
2003.04.11	제 53 호 상선에 승무하는 선장과 직원에 대한 직무상 자격의 최저요건에 관한 협약
2001.12.27	제 26 호 최저임금의 결정제도에 관한 협약
2001.12.27	제 88 호 고용서비스 기관에 관한 협약



2001.12.27	제 135 호 근로자 대표에 관한 협약
2001.12.27	제 131 호 최저임금제도 수립에 관한 협약
2001.03.29	제 156 호 가족부양의 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고용 및 기회균등에 관한 협약
2001.03.29	제 182 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철폐에 관한 협약
2001.03.29	제 19 호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에 있어서의 내외국인 평등대우에 관한 협약
1999.11.15	제 144 호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삼자협약에 관한 협약
1999.11.15	제 159 호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
1999.01.28	제 138 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1998.12.04	제 111 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1997.12.08	제 150 호 노동행정(역할·기능·조직)에 관한 협약
1997.12.08	제 160 호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
1997.12.08	제 100 호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
1994.01.21	제 142 호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직업지도 및 훈련에 관한 협약
1992.12.09	제 122 호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
1992.12.09	제 81 호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1992.12.09	제 73 호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 부록 3: 대한민국에서의 멸종 위기종

<u>Acrocephalus tangorum</u>	MANCHURIAN REED-WARBLER (E)
<u>Aegypius monachus</u>	CINEREOUS VULTURE (E)
<u>Anas falcata</u>	FALCATED DUCK (E)
<u>Anas formosa</u>	BAIKAL TEAL (E)
<u>Anser cygnoides</u>	SWAN GOOSE (E)
<u>Anser erythropus</u>	LESSER WHITE-FRONTED GOOSE (E)
<u>Aquila clanga</u>	GREATER SPOTTED EAGLE (E)
<u>Aquila heliaca</u>	IMPERIAL EAGLE (E)
<u>Aythya baeri</u>	BAER'S POCHARD (E)
<u>Ciconia boyciana</u>	ORIENTAL STORK (E)
<u>Columba janthina</u>	JAPANESE WOOD-PIGEON (E)
<u>Coturnicops exquisitus</u>	SWINHOE'S RAIL (E)
<u>Cuon alpinus</u>	ASIATIC WILD DOG (E)
<u>Egretta eulophotes</u>	CHINESE EGRET (E)
<u>Emberiza aureola</u>	YELLOW-BREASTED BUNTING (E)
<u>Emberiza sulphurata</u>	YELLOW BUNTING (E)
<u>Emberiza yessoensis</u>	OCHRE-RUMPED BUNTING (E)
<u>Falco cherrug</u>	SAKER FALCON (E)
<u>Gorsachius goisagi</u>	JAPANESE NIGHT-HERON (E)
<u>Grus japonensis</u>	RED-CROWNED CRANE (E)
<u>Grus leucogeranus</u>	SIBERIAN CRANE (E)
<u>Grus monacha</u>	HOODED CRANE (E)
<u>Grus vipio</u>	WHITE-NAPED CRANE (E)
<u>Haliaeetus pelagicus</u>	STELLER'S SEA-EAGLE (E)
<u>Hyla suweonensis</u>	
<u>Hynobius quelpartensis</u>	

<u>Larus relictus</u>	RELICT GULL (E)
<u>Libellula angelina</u>	
<u>Limosa limosa</u>	BLACK-TAILED GODWIT (E)
<u>Locustella pleskei</u>	STYAN'S GRASSHOPPER-WARBLER (E)
<u>Lutra lutra</u>	COMMON OTTER (E)
<u>Megalurus pryeri</u>	MARSH GRASSBIRD (E)
<u>Mergus squamatus</u>	SCALY-SIDED MERGANSER (E)
<u>Naemorhedus caudatus</u>	CHINESE GORAL (E)
<u>Neophocaena phocaenoides</u>	BLACK FINLESS PORPOISE (E)
<u>Nipponia nippon</u>	CRESTED IBIS (E)
<u>Otis tarda</u>	GREAT BUSTARD (E)
<u>Pelecanus crispus</u>	DALMATIAN PELICAN (E)
<u>Pelecanus philippensis</u>	SPOT-BILLED PELICAN (E)
<u>Pitta nympha</u>	FAIRY PITTA (E)
<u>Pteromys volans</u>	RUSSIAN FLYING SQUIRREL (E)
<u>Rana chosonica</u>	
<u>Rana nigromaculata</u>	BLACK-SPOTTED POND FROG (E)
<u>Sciurus vulgaris</u>	EURASIAN RED SQUIRREL (E)
<u>Terpsiphone atrocaudata</u>	JAPANESE PARADISE-FLYCATCHER (E)
<u>Threskiornis melanocephalus</u>	BLACK-HEADED IBIS (E)
<u>Tringa guttifer</u>	SPOTTED GREENSHANK (E)
<u>Tryngites subruficollis</u>	BUFF-BREASTED SANDPIPER (E)
<u>Ursus thibetanus</u>	ASIATIC BLACK BEAR (E)

참고문헌 IUCN 2006. 2006 IUCN 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 <[www.iucnredlist.org](http://www.iucnredlist.org)>. Downloaded on **04 January 2007**. [http://www.animalinfo.org/country/south\\_ko.htm](http://www.animalinfo.org/country/south_ko.htm)

## 부록 4: 용어 해설

**생물다양성:** 특히 육상, 해양 및 기타 수중 생태계 및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생태적 복합체 등 생물의 변이. 이는 종 내, 종 간,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생물다양성협약, 1992 참조)

**생물학적 방제 매개체:** 다른 생물체의 수를 제거하거나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생물체

**생물다양성 가치:** 생물다양성의 본질적, 생태적, 유전적, 사회적, 경제적, 과학적, 교육적, 문화적, 휴양적 및 미적 가치 및 그 구성요소 (생물다양성협약, 1992 참조)

**관리의 연속성 (CoC):** 산림 내 원산지로부터 최종 이용까지 임산물이 유통되는 과정

**화학물질:** 산림경영에 사용되는 일련의 비료, 살충제, 살균제, 호르몬

**기준:** 산림경영의 원칙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수단

**관습권:** 지속적인 반복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습관적, 관습적인 행동으로 굳어진 권리로, 그렇게 반복되고 묵인됨으로써 지리적 또는 사회학적 단위 내에서 법률적 효력을 획득한 것

**생태계:** 상호의존적인 단위로서 기능하는 식물과 동물 군락 및 그들의 물리적 환경

**멸종 위기 종:**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멸종 위기에 처한 종

**외래종:** 자생 또는 지방토착이 아닌 도입종

**산림의 본질:** 천연림의 구성, 동태, 기능 및 구조적 특성

**산림경영/경영자:** 경영체계와 구조 및 계획, 현장 작업 등 산림자원 및 기업의 운영 및 경영에 책임이 있는 사람

**산림경영단위(FMU):** 다년간 경영계획 하에 일련의 명백한 목적으로 단일경영체에 의해 경영되면서 지도상의 경계와 함께 일정 영역의 산림면적

**산림관리(Forest Stewardship):** 산림경영을 위한 FSC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환경적 책임, 사회적 혜택, 경제적 타당성을 지향하는 산림경영.

**유전자 변형 물질:** 유전자적 구조 변화를 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에 의해 유도된 생물 유기체.

**지표:** 측정되거나 설명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변수로서 산림경영단위가 FSC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수단을 제공. 지표와 관련 경계점은 산림경영단위 수준에서 책임있는 산림경영의 요건을 정의하고 산림평가의 1 차적 기초가 된다.

**원주민 토지 및 영토:** 원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소유했거나 다른 방식으로 점유 또는 사용했던 토지, 대기, 물, 바다, 빙하, 동식물상, 기타 자원의 총체적 환경(원주민 권리 선언 : 4 부)

**원주민:** "다른 문화나 인종이 다른 세계로부터 와서 정복하고 정착하거나 원주민을 감소시키고 식민지화 했던 시기에 이미 그 지역 전부 또는 일부에 거주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현재 후손; 이들은 지금 살고 있는 국가의 제도를 따르기보다 자신들만의 독특한 사회 경제적, 문화적 관습과 전통 을 중시한다." (원주민에 관한 UN 실무그룹에서 채택한 정의).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HCVF):**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은 다음과 같은 속성 중 하나 이상을 갖는다:

- a) 전세계적, 지역적, 국가적 중요성을 갖는 산림 면적 : 생물다양성 가치가 응집(예, 풍토성, 멸종위기 종, 다른 지역에서 멸종한 종이 살아남는 특수지역); 대부분 천연적으로 발생한 종의 집단서식지가 자연 상태로 풍부하게 존재하는 경영단위 내 에 있거나 경영단위를 포함하는 대규모 경관차원의 산림
- b) 희귀, 위협, 멸종 위기 생태계 내에 있거나 이 생태계를 포함하는 산림면적
- c) 위기 상황에서 자연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면적(예, 유역보호, 침식방지)
- d) 지역사회의 기본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반이 되는 산림면적(예, 생계유지, 건강), 그리고, 지역사회의 전통문화 정체성에 중요한 산림면적(문화적, 생태학적, 경제적, 종교적 중요성)

**경관:** 지리적, 지세적, 토양, 기후, 생물적 및 인간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호 생태계로 구성된 지리적 모자이크

**지방법:** 부처, 시 및 관습적 규범 등 국가차원 보다 낮은 수준의 사법을 행하는 정부 조직에 의한 모든 법적 규범을 포함한다.

**장기:** 경영계획의 목적, 벌채율, 보전임지를 유지하기 위한 임무에 의하여 명시된 산주 또는 경영자의 시간 규모. 시간 길이는 내용과 생태적 여건에 따라 다르며, 벌채와 교란 후 천연 구조와 구성을 회복하거나 성숙 또는 1차 상태로 되기 위해 생태계가 걸리는 기간의 함수이다.

**자생종:** 해당 지역에 원래부터 있던 토착 종

**자연순환:** 주어진 현지의 생태적 생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산림환경의 토양, 물, 식물, 동물의 상호작용에 의한 영양분 및 광물의 순환.

**천연림:** FSC 승인 국가별/지역별 산림경영표준에 의해 정의된, 복잡성, 구조 및 다양성과 같은 천연 생태계의 주된 특성과 요소가 존재하는 산림면적.

**비목재 임산물:** 목재를 제외한 모든 임산물로, 기타 식물이나 동물의 산물은 물론 수지와 나뭇잎과 같이 나무에서 얻어진 물질.

**기타 산림 유형:** 인공림이나 천연림의 기준에 맞지 않고 FSC 승인 국가별/지역별 산림경영표준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의된 산림면적

**인공림:** FSC 승인 국가별/지역별 산림경영 표준에 의해 정의된, 식재, 파종, 집약적 조림처리 등에 의하여 천연생태계의 주된 특성과 요소가 미비한 산림면적.

**사전예방 접근:** 사전예방 원칙의 이행을 위한 수단.

**원칙:** FSC 경우, 산림경영의 본질적인 규칙 또는 요소.

**조림:** 소유자의 목적에 최적이 되도록 산림을 조성, 구성 및 생장을 정교히 하여 산림을 만들고 무육하는 기술. 이는 목재생산을 포함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음.

**소규모 저강도 산림경영(SLIMF):** 목재 벌채의 규모나 강도와 연관되어 FSC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산림경영 단위로 체계적인 평가절차를 이용하는 인증기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는 FSC 요구조건은 FSC-STD-01-003 SLIMF 적격성 기준에서 정의된다.

**이해당사자:** 산림경영단위가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합법적인 관심을 갖는 개인이나 기관; 산림경영단위 활동, 생산품 및 서비스의 환경적, 사회적 영향에 관심있는 개인이나 기관. 이들은 산림경영단위에 대해 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 환경적인 통제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기관을 포함; 지역주민, 피고용인, 투자자와 보증인; 고객과 소비자; 환경단체 그룹, 소비자 단체 및 일반 대중.

**천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인 진행으로 종 구성과 산림군락 구조의 점진적인 변화.

**보유권:** 특정 토지 및 기타 자원(입목, 식물종, 물, 광물 등)의 소유권, 보유, 접근 및 이용의 “전반적인 권리와 의무”에 관해, 개인이나 단체에 의하여 보유되거나, 법령이나 관습에 의하여 인식된 사회적 합의.

**위협 종:** 가까운 미래에 전부 또는 중요 일부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종.

**사용권:** 지역 관습, 상호 동의에 의한 또는 기타 접근권을 보유한 주체가 규정하는 산림자원의 이용권. 이러한 권리는 특정 수준의 소비 또는 벌채기술에 한정하여 특정 자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 부록 5: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인증 평가 절차 요약

인증심사과정은 신청자가 레인포레스트 연맹 측으로 인증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레인포레스트 연맹은 대상 지역의 범위와 신청자에 대한 검토를 한 후, 예비심사 또는 본 심사에 대한 인증절차를 신청자 측에 제안하게 된다. 모든 신청 건에 대해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업무관리자(task manager)가 배정되며, 업무관리자는 일정 조정 및 실제적인 심사 과정에서 대표 감사관(lead auditor)과 신청자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감사관에게는 사전심사결과를 포함하여 인증절차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이 제공(인편 또는 전화)되며 산림 심사를 위한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지침서가 전달된다. 감사관에게 제공되는 브리핑과 지침서의 목적은 일관적이고 철저한 인증절차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산림인증심사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산림인증절차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3 가지의 방법이 있다.

첫째, 심사에는 해당 지역과 산림사업의 유형에 정통한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정책에 따라 모든 심사에는 지역 전문가가 참여한다.

둘째, 심사팀의 모든 일원들은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인증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각각의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인증심사에는 지정된 대표 감사관(lead auditor)이 모든 심사과정을 지휘하는데, 대표 감사관은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정규 트레이닝 과정을 이수했거나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다른 산림경영심사 또는 감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그 자격이 부여된다.

셋째, 심사에는 그 지역에 특화된 표준이 사용되어야 한다(예를 들어 승인받은 FSC 표준이나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일반 표준에 기반한 '지역잠정표준').



심사팀의 선정 및 계획 - 레인포레스트 연맹은 자격요건을 충족한 대표 감사관과 다른 심사팀원들을 선발한다. 대표 감사관의 첫 번째 임무는 다른 팀원들에게 해당 심사의 범위와 목적, 계획 등을 확실히 숙지시키는 것이다. 심사팀원들에게는 각기 다른 심사 범위(예. 특정 기준 및 지표)가 할당되는데 이는 그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의 성격에 따라 좌우된다. 모든 심사팀원들은 모든 심사 원칙들에 대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으나, 할당받은 기준 및 지표에 대한 자료 수집과 분석 그리고 보고서 작성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 및 지표에 대한 심사를 맡은 팀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해당사자에 대한 통지 - 심사가 있기 최소 45 일 이전에, 레인포레스트 연맹은 해당 심사가 곧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인증 신청자의 산림경영행위가 인증 표준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공해 줄 것을 이해당사자들에게 요청하게 된다.

현장심사 및 자료 수집 - 해당 신청자의 산림경영활동이 인증표준을 준수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감사관들이 산림경영주체의 산림경영 관련 문서들을 검토하고 직원 및 이해당사자들과 인터뷰를 하며 현장관찰과 측정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심사팀은 심사의 범위와 절차 그리고 사용되는 인증 표준을 점검하기 위해 산림경영주체 직원들과 사전회의(opening meeting)을 갖게 된다. 사전회의가 끝나면 문서 검토 및 직원 인터뷰가 즉각 개시되며 그 후에는 심사절차가 현장 검증으로 신속히 이동한다. 현장검증은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감사관들이 선택한 일부 대상지에 대해 이루어지는데, 감사관들은 검증 대상지를 선택하기 위해 산림경영주체의 산림소유 및 경영활동에 대한 현황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이해관계자들과 면담을 하며 중요한 이슈와 관련된 부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현장 방문은 숲, 가공시설, 인근 마을 등에서 이루어진다. 현장방문은 모든 종류의 경영행위들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특히 서로 다른 생물학적 또는 물리학적 조건을 가진 부지들에 대해서는 꼭 현장방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심사팀원들은 개별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을 만나게 된다. 모든 심사에는 해당 산림경영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로부터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이해당사자의 범주에는 지역 공동체, 인근의 토지소유주들, 지역 임산업체들, 환경단체들, 정부기관 그리고 과학자 등이 포함된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심사팀원들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심사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의견개진을 요청한 후 심사 대상이 되는 산림사업의 성과 및 영향에 대한 소감을 수집하게 된다.

자료 분석 및 결론 도출 - 심사 과정 내내 심사팀은 필요할 때마다 집결하여 정보 수집의 진척 정도와 중간결과에 대해 서로 논의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심사팀은 수집된 정보와 증거자료들을 분석하고 규정에 대한 준수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동일한 방식을 유지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심사팀은 인증표준 상에 명시된 심사지표에 따라 산림경영주체의 산림경영성과를 평가한다. 미 준수사항은 분석을 통해 경미한(minor) 사안인지 중대한(major) 사안인지 구분된다. 이 때 미 준수사항이 인증표준 상의 관련 기준을 근본적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미 준수사항으로 간주된다. 반대로 영향력이 크지 않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으며 관련 기준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근본적인 실패를 야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미한 미 준수사항으로 간주된다. 미 준수사항에 대해 심사팀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미 준수 사항 보고(Nonconformity Report, NCR)'를 작성하게 된다.

- **중대한 미 준수사항의 보고(Major Nonconformity Report)**는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인증이 부여되기 전에 산림경영주체가 특정한 '중대한 미 준수사항'에 대한 기준 및 지표를 준수해야 하는 경우에 작성된다.
- **경미한 미 준수사항의 보고(Minor Nonconformity Report)**는 갱신 가능한 5 년간의 인증기간(FSC 인증의 계약기간) 중 특정한 기한(예. 단기간-일반적으로 1 년 이내) 내에 해당 기준 및 지표를 준수해야 하는 경미한 미 준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작성된다.

▪ **관찰사항(Observation)**은 매우 경미한 문제이나 경영주체에 의해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향후에 '미준수사항(NCR)'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감사팀의 의견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NCR 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경영주체는 '관찰을 통한 기타 소견'을 주의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 작성 - 평가 결과들에 근거하여 심사팀은 인증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보고서는 규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되며 경영성과에 대한 세부적인 관찰내용과 전제조건들, 시정조치요구와 관찰의견 등을 포함한다.

인증심사 신청자, 독립적인 제 3 의 검토자, 그리고 레인포레스 연맹 담당자에 의한 심사보고서 검토 - 신청자, 최소 1 명의 독립적인 제 3 의 검토자, 그리고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지역 담당자는 해당 인증심사 보고서를 검토한다.

인증 부여 여부의 결정 - 상기의 모든 절차들이 끝나면, 레인포레스트 연맹의 해당 지역 사무소는 인증을 부여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절차를 밟게 된다. 인증을 부여하기로 결정되면 매년 현장 감사를 조건으로 5 년간의 인증 계약이 체결된다. 만약 인증이 거부되면 향후 인증 신청자가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필요조건들이 심사의 결론으로 도출된다.